

제337회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1 호

국회사무처

일 시 2015년10월29일(목)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 한국우주소녀단 육성에 관한 법률안
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9.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된 안건**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 .....	1
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7
3.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4
4.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	15
5. 한국우주소녀단 육성에 관한 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 .....	16
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17
7.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17
8.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	22
9.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25
10.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27
11.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	29
1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	31
13.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 .....	33

(10시10분 개의)

○소위원장 전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

(10시11분)

○소위원장 전해철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그동안 이게 논의가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새로운 사실만 보고 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알겠습니다.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소위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지난 마지막 소위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가 조금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서 국가재정을 고려해서 도시근로자 가계지출의 50% 이하 등 일정 소득수준 이하에만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구요.

그러나 국가보훈처에서는 제도의 성격과 개정안의 취지를 살펴볼 때 생활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고 다만 어머니께서 보상금을 받은 기간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회의에서는 보훈처와 기재부가 한 번 더 대안을 논의하고 또 수당지급에 제한을 둘 경우 개정안에 대해서도 차등지원을 위한 조문까지도 만들어서 제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으로 정리가 됐구요. 다만 소위원장님께서 조문 자체를 수정하는 것이라면 정무위 여야 간사의 의견 청취 후에 두 부처에서 합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먼저 보훈처, 차장이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보훈처 차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네 차례에 걸쳐서 6·25전몰군경 유자녀수당에 대해서 심의를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더구나 네 차례나 회의를 진행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가 지난번 회의 때 보고드린 대로 이분들의 어머니가 받았던 보상기간이나 보상금액 이런 걸 다 조사·분석은 끝냈습니다. 분석을 끝내고 기획재정부하고 계속 협의해 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 맞는 대안을 만들지는 못 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같이 고민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는 이 법률 개정은 우리가 결론을 좀 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양 부처

간에 의견 차이가 조금 있는 것은 어차피 정부 내에서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금액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좀 더 논의하기로 하고 이제는 결론을 내자라는 의견까지는 접근을 했습니다.

○이한성 위원 기획재정부 말씀하십시오.

○소위원장 전해철 누구지요,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입니다.

저희들이 98년 1월 1일 기준 시점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성인자에 대해서 안 해 주는데, 물론 98년까지는 해 줬지만 이게 일괄적으로 다 확대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보상의 선례가 되는 측면 그리고 재정부담이 향후에 많이 늘어나는 측면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그동안 반대했습니다만 6·25라는 특수성이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법사위 와 보니까 여야 위원님께서 다들 필요성을 인정하신 측면을 감안해 가지고 보훈처하고 다양한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은 일률적으로 다 확대해 줄 수는 없고 좀 어려운 분들만 해 주자고 했는데 보훈단체들은 형편이 괜찮으신 분들도 ‘본인들은 명예가 중요하지 꼭 돈이 중요하나’ 이런 말씀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보훈처하고 세부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미수당 자녀 전원에게 수당은 일률적으로 주고 어려운 사람한테는 가산금으로 더 주는 식으로 해서 스킴(scheme)을 짜는 걸로 해서 그런 쪽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안 통과에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법이 통과되면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전에 어떻게 하는지 스킴도 짜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은 이것을 6·25에만 한정해서 전체적으로 다 풀어 주는데 이게 다른 보상까지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서 부대의견을 달아서라도 이게 절대로 이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6·25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정부가 진짜 예외적으로 선진국에도 없는 특별한 제도를 만들었다는 정신만 살려 주시면 저희들은 동의를 하고 통과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구윤철 심의관 수고했구요. 보훈처 차장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오늘 좋

은 결과가 되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전에 수석, 현재는 시행시기가 어떻게 돼 있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원래 법안이 보훈처로 넘어온 것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부분은 아까 심의 관계서 얘기한 것처럼 준비기간이라든가 명확성 이런 걸 위해서 7월 1일로……

○소위원장 전해철 7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공포 후 6개월’을 수정의견으로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고쳐놨구나,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아무튼 두 분 또 각 부처 그동안 굉장히 노고가 많았어요.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홍일표 위원 공포 후 6개월이나 내년 7월이나 기간 차이는 큰 게 없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미수당 자녀들한테 주는 걸 원칙으로 하되 기간에 따라서 차등으로 더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소득수준에 따라서?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구윤철 예, 소득수준만 감안하는 걸로, 단일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홍일표 위원 소득수준을 감안하는 걸로?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구윤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보상법의 정신도, 지금 생활조정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려운 계층한테는 일률적으로 수당을 주되 생활조정수당을 가산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요 스킴도 똑같은 식으로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주고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조정수당 개념으로 가산을 더 해 가지고 주는 걸로 그렇게……

○홍일표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은 어디에 표시가 돼서……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그것은 규정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시행령상에 대상별로 지급단가를 규정합니다, 정부 내에서 합의를 해서. 그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홍일표 위원 그러면 법에서는 그냥 지급 여부에 대한 원칙만 얘기하고?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이 법은 지급 여부에 대한 것만 하고요.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 당국하고……

○홍일표 위원 그러면 기재부에서 그랬을 때 예산 소요는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있어요?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구윤철 일괄적으로 다 했을 때는 연간 500~600억 정도인데 저희들은 한 반 정도로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홍일표 위원 반 정도로 일단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것은 그때 경제상황에 따라서 또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구윤철 그렇지요. 수당이라는 것은 나라가 발전되면 일정 올라가기도 하고 그동안에 수당의 조정 여지도 있는 겁니다.

○홍일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노철래 위원 그러면 소득수준은 납세를 기준으로 합니까, 월로 소득수준의 그걸 가릴 수 있나?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그야말로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정부에 있는 전산망에 데이터가 다 있어서 소득수준, 재산수준 이런 것은 파악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동의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노철래 위원 소득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구윤철 예, 그리고 지금 현재도 생활조정수당이라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기준과 동일하게 하려고 합니다.

○노철래 위원 생활조정수당?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구윤철 수당, 지급 대상자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노철래 위원 지금 현재도?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국가유공자한테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구윤철 그 부분을 좀 많이 드리는 걸로……

○노철래 위원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소득수준은 납세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기준을 책정한다?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구윤철 예.

○김진태 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이 법만 19대 국회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부대의견은 어떤 식으로 달면 되지요,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글썽요, 구체적인 법안을 개정하면서 부대의견을 별도로 다는 경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속기록이나 이런 데서

전체적인 논의된 내용들이, 그런 취지가 있으니까 발언으로 한다고 하는 건 몰라도 별도로 부대의견을 다는 건 적절할 것 같지 않습니다.

○**김진태 위원** 아니, 적절성이야 더 판단해 보면 되는 건데 달 방법이 있긴 있는 거예요? 달면 그게 어디의 부대가 되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글썽요, 저는 법안을 만들면서 부대의견을 별도로 단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래도 무슨 소위의 의견이라 해가지고 속기록에 그냥 다 녹여 버리는 것 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소위원장 전해철** 그 부분은 전문위원 이야기대로 이 법안을 하면서 또 다른 것까지 부대의견을 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도 적절하지 않고, 그런데 그동안 위원분들이 여러 예산상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다 이야기를 하고 또 오늘 심의관이 이야기한 것은 속기록에 남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잘 참작할 수 있게 이렇게 넘어갔으면 합니다.

○**김진태 위원**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들 간에 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면 이것은 통과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법은 간단합니다. 그야말로 한 줄 빼는 겁니다, 한 줄. 98년 1월 1일로 차등을 둔 그것만 삭제하면 그냥 이 법에서는 다 줄 수 있게, 이것만 하면 예산 부처나 보훈처에서 시행을 거기에 맞춰서 잘하면 되는 걸로 우리는 알겠고요.

다만 한 가지 그 점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법에 대해서 그동안 아주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던 사람으로서 우리 소위 통과를 앞두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법을 그동안 이렇게까지 신중하게 생각한 이유가 국가재정 상황이나 다른 법과의 형평성 이런 것 등을 정말 고민해서 이렇게 해 왔던 건데 그동안 유자녀회, 특히 미수당유자녀회가 보여 온 행태에 대해서는 저는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번 회의 이후에 제 지역구 사무실, 사는 집, 다니는 교회까지 찾아와서 상복을 입고 이런 식으로 아주 무형의 압박을 가하고 하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있는 것이고 다 이게 정말 나라를 위한 일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와서 그런 식으로 집단행동을 했을 경우에 빚어지는 부작용들은 어떻게 할 겁니

까? 이 법을 처리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와서 목소리 큰 사람, 와서 때쓰는 사람만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 주고, 이것 정말 앞으로 우리 국회 입법과정에 이런 식의 행태가 빚어진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을 하고, 그렇지만 이걸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큰 틀에서 이 법 통과에 찬성한다는 것을 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더 없지요?

예,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지금이라도 통과되어서 너무 다행이고요. 지금 김진태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논의하고, 또 악의를 가지고 문제를 지적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우리가 법안 심사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들이 항상 되는 것들이 좀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국가유공자 그리고 또 전몰군경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들에게 명예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였고 지금 그래서 기재부도 크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신 것 같고요.

오늘도 저희가 좀 만났는데, 예를 들면 그렇더라고요. 거의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공비 토벌하러 갔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떠나셨고. 그래서 혼자 큰 경우가 전몰유공자의 경우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회가 만들어 낸 비극이었는데, 이분은 그래도 잘 살아오셨어요. 어머니가 떠나셨기 때문에 비용을 받아 왔는데……

그래서 말씀처럼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가 만들어 낸 비극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간 분들을 우리가 찾고 대우하고 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돌아가실 날들이 다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서 하는 것이 너무 다행이다……

이분들은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위원님, 바로 다음 실시 안 해도 됩니다. 1년 후가 되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년 7월부터 하자고 했으니 오히려 더 검토가 잘된 것 같고요.

경제적인 무리가 아주 따르지 않는 선에서 잘 협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6·25 전몰군경의 경우인데 그러면 순직군경은 빠지나요? ‘또는’이었는데.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이것은 6·25 때 전쟁에서 아버님이 전사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순직군경으로 확대하다 보면 기재부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해 드렸지만 대상이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영교 위원** 많아요, 이런 분들이?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순직군경은 지금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보훈보상의 원칙 입장에서 보면 어렵다……

○**서영교 위원** 지금 발생하는 사람은 어머니가 받았는데 이런 경우와는 다르잖아요, 순직군경은? 그러니까 지금 발생한다고 해서……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지금 이 수당 확대해 드리는 분도 6·25 때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는 죽 받아오셨던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서영교 위원** 어머니가 받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만 해당되는 거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서영교 위원** 지금 순직군경과는 관계가 없는데 그 당시에 비슷한 시기의 순직군경은 좀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그러다 보면 계속 어느 시점을 끊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6·25 전쟁이라는 역사적인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정하는 것이……

○**서영교 위원** 우선 시작은 그렇게 하고 좀 더 현장조사를 통해서 차별이 있다면 나중에라도 한번 더 검토해 보시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그건 보훈보상의 원칙을 지켜 가면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서영교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전해철** 임내현 위원님.

○**임내현 위원** 하여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심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국가유공자를 어떻게…… 그분들에 대한 보상을 하는 문제와 더불어 또 국가재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건가, 이것을 꼭 우리가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보훈처나 기재부가 끈기 있게 해서 이와 같이 좋은 결론을 내려 주신 데 대해서 감사와

또 보람을 느낍니다.

이 원칙이 지난번에는…… 우리가 전몰군경에 대해서 보상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다른 법안 심의할 때 거창 양민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가 또 같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다룰 때 흔히 걸림돌 내지는 조금 신중하게 되는 것이 다른 쪽에서 이렇게 또 유사한 사례를 해서 올 것이니까 이것을 함부로 인정하기 어렵다……

물론 얼른 봐서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우선 중요한 것부터 차근차근 해 준다는, 그렇게 해서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점을 좀 더 강조를 해 줘야지, 그렇게 해 가지고 차별성을 두어서 다른 것은 이만은 못 하니까 우선 아직 재정적으로 안 되면 그것은 보류를 조금 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지 비슷한 것이 있으니까 유력한 것도 해 줄 수 없다는 쪽의…… 그런 것보다는 우선 가장 우선적이고 특별히 해 줄 것부터 하고 다른 것은 또 좀 자제하는 쪽으로 두 가지 조화 있는 것이 필요하고, 오늘 같은 경우가 아주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이게 위원님들이 네 차례, 오늘까지 다섯 차례 하다 보니까 소회가 다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이한성 위원님.

○**이한성 위원** 이한성입니다.

오늘 기재부에서 예산총괄심의관계서 전향적으로 그렇게 자세를 취해 주셔서 가지고 감사드리고, 지난번에 논의할 때도 못한 박았습니다. 적어도 19대 국회에는 이것만 한다……

사실 지금 정무위에서 법안이 한 열 가지 정도 되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이한성 위원** 그리고 국방위에서 또 하나 넘어온 게 있습니다, 켈로부대, KLO부대. 켈로부대도 또 많아요, 보니까. 구월산 지역에 켈로부대가 있고 또 전국에, 북한 지역에 켈로부대가 있더라고요. 현지 북한인들끼리 그렇게 의용군을 만들어 가지고 정보전도 펼치고 미군에 협조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진짜. 그런데 최근에 켈로부대가 넘어와 가지고 2소위에 와 있는데, 이게 정말 끝이 없이 이렇게…… 해당 상임위에서는 그것도 유관단체이고 하니까 좀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식으로 도와주고 있거든

요. 그러니 법사위에 넘어오니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균형을 잡아 줘야 하니까 아주 시달리게 되고 김진태 위원님처럼 고통도 당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19대 국회 임기가 다 되어 가니까 6·25 전몰 유가족만…… 또 약간 불합리하게 1998년 1월 1일자로 잘린 그게 객관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편의상 그리 해 놓은, 영겁결에 해 놓는 바람에 그것을 자른 것은 이해가 잘 안 되고 이래 가지고 계속 유족들이 반발해 왔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하는데, 보훈처에서는 국방부와 상의해 가지고 적어도 6·25 때 이렇게 많은 희생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규군인 말고도 학도의용군도 있고 켈로부대도 있고 이렇게 많아 가지고 이것을 기재부하고 해서 장기적으로 한 10년 내지 15년에 걸쳐서 죽……

사실 또 유족이 돌아가실…… 자꾸 연세도 많아지잖아요. 지금 유족들도 나이가 적어 봐야 한 65세, 66세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또 이게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런 것을 계획성 있게 전체 균형을 맞추어서 예산총괄심의관 말씀대로 스킴(scheme)을 잘 짜라, 스킴이 한국말로 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장기계획을 잡아서 이게 억울함도 없이 균형도 잡고 형평도 기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예, 그러시지요. 아무튼 오늘까지 다섯 차례 소위에서 논의할 때 위원님들이 국가의 재정 부담, 또 예산상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 전몰군경 등에 대해서는 어려움이나 명예를 보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한 충분히 공감을 해서 오늘 어렵게 합의를 이뤄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홍일표 위원 잠깐, 기재부 심의관이 아까 부대의견으로 달았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본다 이런 합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가야지……

○소위원장 전해철 아니, 그것은 곤란하지요. 그동안 이야기할 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재부 예산이나 또 다른 형평성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지

금 어떤 법이 어떤 내용인가도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것을 우리가 일률적으로 소위에서 의결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좀 권한도 남용이예요.

그래서 속기록에 충분히 남기고 그런……

○홍일표 위원 그러니까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법사위원들이 공감을 한다 이런 정도로……

○소위원장 전해철 아니요, 홍 위원님, 그 부분은 어떤 법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어떤 보상이든 굉장히 천차만별한 것 아니예요? 그것을 일률적으로 다 한다는 것은……

○홍일표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봐요, 기재부에서.

○소위원장 전해철 그것은 좀 맞지 않고, 심의관이 이야기한 대로 그런 예산상의 문제나, 또 우리가 몇 차례 이야기할 때 다른 것에 대한 파급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한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 이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김진태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보훈처도 그렇고 기재부도 그렇고 해당 상임위에서 해결을 하세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을 해 가지고 거기 어떤 식으로 하든지, 기재부 장차관이 가서 하든지, 보훈처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절대 안 되게 해야지 이것을 해당 상임위에 가서는 대강 여야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다 꼭 법사위에 와서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취지를 오히려 해당 상임위 가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두 분 다. 심의관 이야 그것 말고 다른 것도 있지만 가서 장차관께 보고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해당 상임위에서 법사위 소위에서 이런 것들이 논의됐다고 이야기하고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게.

이 정도 하시고 이것은 넘어가시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위원장님, 한 1분만 발언……

○소위원장 전해철 짧게 하세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위원님들이 부대의견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앞으로 기획재정부하고 양 부처 간에 모든 법률개정안 논의를 할 때 이 속기록을 저희 양 부처가 같이 놓고 같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걱정을 덜

어드릴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김진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유자녀들이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유자녀 단체한테 김진태 위원님의 진정성을, 그다음에 국가를 위한 충성, 충심을 다시 한 번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것을 보훈단체에 전달을 해서 위원님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예, 하시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0시36분)

○소위원장 전해철 의사일정 제2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심태규 전문위원, 우리 신속하게 해서 가능한 오전 중에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태규 전문위원 보고하세요.

○전문위원 심태규 의사일정 제2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다시피 심사 경과는 2소위에서 상정돼서 1·2·3차까지 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아시다시피 약국 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에 의약품 공급자에게 의약품 거래 대금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있었고, 저번 3차 소위에서 대금지급 기간의 법정화에 대해서 입법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지급 여부에 따른 대금지급 기한 차등화 등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죽 넘어가셔서 4페이지 보시면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에서 종전 개정안 대신에 별도의 부령 위임 없이 ‘의약품 수령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다만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수정하기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장 6개월인데 만일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6개월보다 먼저 도래하면 그날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돈을 먼저 받은 경우에는 돈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고 돈을 받은 안 받은 최장은 6개월이다, 이렇게 되는 문구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수정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소위에서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전문위원 심태규 예, 시안을 만들어 온 겁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때 이런 안도 고려해 보자 해서 어찌 보면 개정안보다는 더 강화된 수정의견이 나왔는데요.

일단 정부 측 의견 이야기하시지요.

참여하신 분이, 이제 복지부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복지부 차관 방문규입니다.

이 법안은 상임위안보다 법사위 수정안이 조금 더 강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월적 지위에 있는 병원들의 소위 말하는 약값 외상값의 관행을 끊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법사위에서 조금 더 강화된 수정안이 채택이 됐습니다마는 실제 병원에서 재고품 관리나 실제 재고품 관리한 약이 사용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것 등등을 감안해 볼 때는 상임위안 수준에서 해 주시면 충분히 집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정부로서는 조금 더 강화된 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적용 과정에서는 병원에서 여러 가지 애로를 호소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상임위안 수준에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잠깐만요, 정리하시고.

이렇게 저희들의 수정의견이 있지만 복지부 입장에서는 애초 복지위원회에서 했던 개정안대로 6개월 이렇게 하는 것이 병원협회나 이런 데 반발도 막으면서 적용하는 데 낫다 이런 의견이신 거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님들 이야기하시지요.

○김진태 위원 차관님이 조금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외형상으로 봤을 때는 3개월 안이 더 강화된 것처럼 됐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반대의견을 내면서 6개월 동안도 재고기간이 된다, 그래서 6개월로 하면 이게 정말 너무나 큰 압박이 된다, 이것을 주장해서 수정의견으로……

제 기억에는 그때 존경하는 임내현 위원님이 ‘그러면 심평원에서 돈을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면 어떠냐’ 그래서 저도 ‘그것은 진실보한 수정안이다’ 이렇게 돼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돈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로 하기에는 너무 기니까 그러면 3개월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병원들도 돈을 받고 우리가 안 줄 일은 없다, 항상 이런 논리였기 때문에 가능한데 다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돈을 받든 안 받든 6개월이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만 빼면 가능하겠어요.

○전문위원 심태규 김진태 위원님 안은 이런 겁니다. 먼저 요양급여비용을 받고 3개월이 지난 날이 6개월보다 먼저 도래할 때는 돈 받은 날로부터 3개월까지고 그 대신 6개월보다 이후로 가더라도 그때도 돈 받은 날로부터 3개월까지……

그러니까 모든 게 돈 받은 것을 기준으로 3개월로 하자는 그런 주장이십니다. 이 안과는 약간 다른 주장이십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렇지요.

김 위원님, 그래서 현재 수정의견에 따르면 그것은 아닌 거지요.

○김진태 위원 그것만 빼면 되는 거예요, 6개월.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니까 현재 수정의견이 두 가지로 바뀌었는데 6개월 이내라는 것을 쓰느냐 안 쓰느냐 하는 문제지요. 6개월 이내라는 것을 지금 수정의견으로 써 봤잖아요.

○김진태 위원 그러니까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지요.

○소위원장 전해철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얘기하시는데, 지금 병원협회나 이런 데서도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애초에는 절대 개정안에 반대하다가 최초의 상임위안이면 자기들도 수용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지 않나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게 아니던데?

○소위원장 전해철 차관 이야기가 맞겠지요.

위원님들 또 의견 이야기해 보시지요.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돈 받았으면 3개월 내로, 이게 문제가 되나요?

지금 말씀이 6개월로만 해 주면 ‘돈 받은 후부터는 3개월 내로’ 이것을 빼 달라는 얘기시잖아요, 원래 상임위안으로 가자는 것은.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지금 대안으로 해 주셔도 큰 문제는 없는데 그 대안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 수정안도 좋고 상임위 원안도 좋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걱정하시는 부분을 감안했을 텐데 저희가 필요한 것은 적어도 6개월 기간은 지켜서 일단 6개월이 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제일 중요하다, 다만 기술적으로 그 안에서 건보에서 약값을 받은 이후에 3개월이 됐든지 어떻게 됐든지 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금 지급이 일정한 기간이 넘지 않도록 하는 그 규정을, 그런 새로운 제도를 만든다 하는 데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위원 저는 지금 말씀처럼 6개월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고 그것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합의 봤으니까,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왔으니까……

그런데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참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진실보해서 편찮은 것 같은데 저는 이 안에 동의를 하고 그렇게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수정의견에요?

○서영교 위원 예.

○소위원장 전해철 다른 위원님들.

노철래 위원님.

○노철래 위원 물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전환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안 되는데 대금 지급이 6개월을 넘는 병원의 경영상태, 예를 들어 그게 후자병원이든지 적자병원이든지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병원의 차입금 규모나 병원의 경

영상태 같은 것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실태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마련되어 있나?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지금 여기 규정에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노철래 위원 그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노철래 위원 그러면 6개월을 넘으면서 교묘하게 악용하는 경우도 다 그것은 파악해서 대응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6개월을 넘겨서는 안 되는데 병원이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적용을 예외 할 수 있는, 47조5항에 예외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전해철 단서조항이 있는 것 아니에요? ‘다만’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노철래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좋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 실제 중소병원 등 경영상태가 문제되는 병원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지원할 경우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우려, 이런 것이 해소될 방안이 있나?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대상기관을 정할 때 저희들에 1년에 사용하는 약값 규모를 산정하고 있는데요, 그 규모로 볼 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 10% 정도 대상 병원이 상급병원이나 종합병원급에 해당되는 기관이 들어가고 일반 개인 병원이나 의원급 병원은 이 대상에 들어가지 않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철래 위원 그런 식으로?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노철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이한성 위원님.

○이한성 위원 제가 좀 발언하겠습니다.

차관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감사합니다.

○이한성 위원 기획재정부 계실 때 없는 국가채정 나누어 주느라고 큰 수고도 하시고 또 이렇게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이게 우리 법사위 안에서 수정안도 나오고 보건복지위에서는 대안도 있고 두 가지 안이 있는데, 그러면 병원이 갑인 셈입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것은 일반적으로 아

무래도 대금을 지급하는 쪽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병원도 경영이 어려운 병원이 있고 흑자내는 병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한성 위원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대단히 획기적인 항암제가 나왔다, 그러면 제약회사가 갑이지요? 그런 경우 많을 텐데.

미국에는 제약회사가 훨씬 갑이더라고요, 그게 갑이고. 그래서 아마 정부 로비 때문에 그런지 병원이나 메디케어에서도 제약회사를 상대로 약값 흥정까지도 상당히 제약을 받고, 제약회사에서 허셉틴, 어비투스 이렇게 여러 가지 항암제 가격 정하면 그것을 꼼짝 못하도록 한 달에 만 달러 정도 치는 그런 약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병원 따라 다르고 제약회사 따라 다른데 어쨌든 이게 이해 조정은 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복지부 차관님 입장에서는 대안 정도가 맞다고 하시니까, 이러면 제약회사와 병원 간의 이해 조정이 제일 합리적으로 됐다는 뜻입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제가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실상을 파악하는 것은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한성 위원 실무자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냥 일반적으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병원 입장 측에서는, 돈을 주는 입장 측에서 이런 규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없으면 편리하니까 이것을 찬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런 기간을 규정해 가지고 이렇게 규제하는 경우에 이런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데는 그동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없으면 제일 좋지만 만약에 부득이 그게 필요하다면 이런 정도의 기간은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이제까지 저희들 의사소통을 한 내용인데, 실무자가 조금 더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래요, 누구신가 이야기하고.

○이한성 위원 직위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국장 김강립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좀 크게 이야기하세요.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김강립 지금 현재

대부분의 병원들, 저희가 평균적으로 하면 약을 병원에 들여오고 나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돈을 받는 기간까지가 석 달이 소요됩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3개월이……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김강립** 예, 3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90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월로 산정을 하면 평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 지금 저희가 산정하고 있듯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병원을 만약에 한 11% 정도로 산정한다면 이 기관들은 대부분 70일에서 78일 사이에 약을 받고 나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6개월이라고 하면 그래도 대금을 지급하는 기간까지 상당 기간을 병원이, 의료기관들이 향유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제약회사가 대부분 문제가 아니라 도매상들이 2000여 개가 있습니다. 그 2000여 개의 도매상들은 사실은 병원들보다는 훨씬 어려운 경영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병원들이 오히려 지급기간이 길고 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봐 주시면 되겠고요.

병원협회에서도 만약에 이게 오늘 논의되는 정도가 되면 자율적인 본인들의 시정 노력, 그리고 저희가 이 법을 1년 6개월의 시행기간 유예를 두고 있는데, 그 정도 기간 동안에 보다 본인들도 그 기간을 앞당기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김진태 위원** 제가……

○**소위원장 전해철**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거기에서 이게 갈리는데요, 2개 중에 어떤 게 좋을 것이냐,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이나 거래한 날로부터 6개월이나……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처음에는 6개월만 상임위안이 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게 사적 자치의 원칙 위반이다, 과도한 규제다 이래 가지고 돈을 못 받았는데 6개월 내에 줘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 나온 게 수령일로부터 3개월이거든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병원들한테 유리하게 고치려고 3개월이 나온 건데 그 6개월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이게 더 불리해지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것은 약간 이상하게 된 거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3개월이 병원들이 받아들이기에 더 좋은 조건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하여튼 재고기간이

길다는 거거든요.

아까 국장이 얘기한 것으로도 청구해서 받는 데도 두 달, 청구기간이 여기 보면 최대 90일까지 걸리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요컨대 받은 날로부터 3개월만 두고 그런 경우에는 보험급여 약품일 경우에는 거래일 6개월 제한은 없어야 되는 거지요. 그게 정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러면 3개월 그걸 차라리 없애고 상임위에서 넘어온 원안대로.

○**소위원장 전해철** 그렇지요.

○**김진태 위원** 지금 차관도 차라리 그게 낫겠다는 거지요. 그 2개 중에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정리하면, 위원님들 뜻이 모아지지만 저희들이 이것은 일단은 제도를 시행하자는 것까지는 이전 소위할 때도 두어 차례 하면서 했고요.

다만 기간에 대한 건데 그건 김진태 위원님 이야기대로 병원에 과도한 피해를 주면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받은 걸로부터, 받은 것은 당연히 내야 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후 의견을 들어 보니까 병원협회에서 이게 더 옥죄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김진태 위원** 그런 게 많아요, 정말?

○**소위원장 전해철** 예, 병원협회에서. 그래서 복지부 차관이나 아까 실장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원안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수용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취지 당연히 아시지만 거대 제약회사보다는 도매약품회사들의 불이익을 막아 주려는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대한 피해가 우려됐었는데 병원에서 오히려 6개월로 해 주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참작해서 제 생각에는 그런 취지라면 원래 개정안대로 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말씀하시지요.

○**서영교 위원** 2개 다 해야 된다니까요. 뭘 가혹해, 가혹하기는.

○**홍일표 위원** 3개월 조항이 보기에 따라서, 우리는 그게 더 병원을 보호한다고 보는데 그게 보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정들이 있어서 그게 더 큰 제재가 된다고 느낀다면 우리가 상임위안을 더 강화해서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인니까 그렇게 하는데.

전문위원, 의료법과 병행심사해야 된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현재?

○전문위원 심태규 약사법만 통과되면 약국 개설자는 이 법 위반인 경우에 시정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서도 이 의무를 주게 되어 있는데 의무 규정이 약사법에는 있지만 의료기관 개설자에는 약사법에 대한 제재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의료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47조5항을 위반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할 방법이 없고 약국 개설자에 대해서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벌이 차별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 법 시행되는 공포 후 1년 6개월 때까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이 부분이 불균형하게 됩니다, 제재가. 그래서 저는 의료법이 오면 같이 개정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홍일표 위원 차관 의견 말씀하세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건 시정명령과 관련된 조항이고요. 사실 긴급한 것을 보면 우선 6개월 기간 제한을 뒤서 대금 지급을 원활하게 하는 게 더 이 법 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6개월 적용은 의료법과 상관없이 적용될 수가 있고요.

다만 시정명령을 했을 때 시정명령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의료법하고 약간 상충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다만 이 시행이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의료법 개정이 그 안에 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논의를 한 번 했었는데?

○전문위원 심태규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게 아까 원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임위의 원안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가능한 짧은 기일'이라고 해서 이걸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원안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의약품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만으로 하신다는 뜻인지……

○소위원장 전해철 아니, 원래 개정안으로 해야지.

○김진태 위원 거래일.

○전문위원 심태규 그러니까 거래일부터, '의약품 받은 날로부터 6개월'로 그냥 하신다는 것인

지, 아니면 거기서 다시 또 줄일 수 있다는 것인지?

○소위원장 전해철 아니, 원안이라는 건 여기 나온 대로 '의료기관에 도착한 날로부터 6개월의 범위' 이렇게 가야지요.

○이한성 위원 약품 인도.

○소위원장 전해철 인도.

○전문위원 심태규 상임위안은 그걸 다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짧은 기일이라고 해서 다시 정하게 되어 있는 게 원안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6개월 내의 범위에서.

○김진태 위원 4개월로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 심태규 예, 그러니까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상임위안은.

○홍일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러면 그것은 그냥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심태규 그걸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차관이 문구를 한번 불러 보세요, 개정안을 4페이지 보시고.

○전문위원 심태규 제가 한번 정리해 보면, 4페이지 있는 것입니다.

수정의견 부분에 47조5항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공급자에게 의약품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을 수령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다만' 다음에는 일단 생략을 하고, 개정안 쪽에 보시면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다만,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의약품 공급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의약품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걸 붙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외조항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임내현 위원 6개월을 더 줄이지 않고 6개월로 정하는 걸로 고치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임내현 위원 그렇게 해서, 전의 사적자치를 너무 침해한다는 주장도 법리상으로는 일리 있고 또 상당한 병원에서는 이게 무리하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그사이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까, 병원 의료기관에서?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아까 담당 국장이 보고드린 대로 물론 이게 규제가 없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약에 선택을 한다고 하면 그런 안이 오히려 더 낫다, 왜 법사위 수정안 ‘건보에서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이 더 불리하느냐면 보통한 2개월 안에 집행이 되면 2개월 플러스 3개월 하면 5개월까지 집행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리할 수도 있다.

○**임내현 위원** 하여튼 6개월로 개정안을 좀 수정하면 이것은 상대방에게도 상당히 도움되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임내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아니, 돈을 받았는데, 받고 3개월 내에 지급하는데 뭐가 불리한 거지요, 도대체?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런데……

○**서영교 위원** 돈이 들어왔고, 원래 물건을 낸 사람들은 자기 돈 들여 가지고 물건 다 대고……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창고 안에 있는 약품이 여러 개 있는데 어떤 약품은 들어온 지 1개월 됐고 어떤 약품은 12개월 또는 16개월 경과했습니다. 그런데 사용된 약품이 1개월 안에 들어온 건지 12개월 전에 들어온 건지 그런 것들을 평균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병원 측에서는 그런 애로를……

○**서영교 위원** 그러면 납품해 준 사람은요, 납품해 준 사람은?

○**소위원장 전해철** 국장이 대답해 보세요.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김강립**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 지적해주신 대로 납품한 도매업체나 제약업체 입장에서 보면 납품한 이후에 대금 회수까지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는 면은 있습니다만 약에 6개월 이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의 관행보다는 상당히 대금 지급을, 최소한 아주 극단적인 사례들이 나오는 것까지는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막을 수 있고.

또 기술적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특정 제품, 왜냐하면 이게 제품별로 납품기한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약품은 워낙 사용빈도가 낮기 때문에 이걸 일률적으로 해서 기간을 딱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틈을 더 주는 것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일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런 것을 이해한다고 쳐도요, 그러면 대금을 건보로부터 받는다고 할 때 1개월 짜리 있고 12개월짜리 있고 다 해서 받아요? 건보로부터 받을 때는 일정 쓴 약품에 대해서 받으니까 대금은 쓴 약품에 대해서 지급할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김강립** 청구한 의약품에 대해서 심사해서 지급을 합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요, 청구한 의약품에 대해서 심사해서 지급을 받는데 지금 말씀처럼 그러면 도매업자에게 줄 때는 12개월까지 청구한 것 말고도 다 줘야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김강립** 지금 6개월 이내라는 조항으로……

○**서영교 위원** 하면 그것까지 다 주는 거고?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김강립** 예, 검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6개월 이내에서…… 왜 6개월 이내로 정했느냐 하면, 그게 물론 지급을 받게 되면 더 빠리, 그러니까 두 가지의 대안 중에서 지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을 하는 경우가 평균적으로는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 안 되고 5개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의약품은 그것보다 더 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로 해 놓으시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현장의 혼란도 줄이고 도매상이나 이쪽에 최소한 대금을 너무 장기간에 걸쳐서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은 두 가지 장치를 같이 두는 거였거든요, 6개월에다가 3개월을 같이 두는 건데, 잘 상식적이지 않은 것은 대형병원과 큰 병원이 가장 경제적으로 나은 상황인데, 그리고 중간에 납품하는 도매업자들이 가장 열악한 상황이고 그런데 대금도 받고 그리고 이들은 자기네가 원금 내 가지고 경제적으로 치르면서 그 돈이 나오기를 바라고, 또 대금 받으면 대금 받은 돈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 일정한 이득을 취하고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형병원이 그동안 너무 많은 우월적 지위에 있었고 지금도 사실 조금 문제 제기가 되어서 고쳐지는 게 다행이기는 하나, 말씀처럼 3개월 일정 부분 받은 특별의약품만이잖아요? 자기네가 쓰고 나서 그 쓴 것을 청구했고 그것에 대해서 대금을 받은 것, 그것 같은 게 있는 거니

까 빨리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도 3개월 후까지 지급하는 건데 그게 무슨……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김강립 두 가지 대안으로 안 내주신 것에 대해서……

○소위원장 전해철 서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애초에 사적자치에 대한 것 때문에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서영교 위원 그것이 사적자치하고……

○소위원장 전해철 아니, 병원의 사적자치를 침해하는 거다라는 문제 제기 때문에 이렇게 됐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병원의 입장이 좀 더 완화된 것을 요구한다면 요구한 대로 법사위에서는 하는 게 맞지 않냐, 더 강한 것은 안 맞다니까. 이 정도 양해를 해 주시지요?

○김진태 위원 부칙에 대해서 한 가지.

○서영교 위원 강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은 3개월 내로 준다는데 그게 왜 강한 거지요?

○김진태 위원 그리고 지금 부칙에 시행일이 1년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는 김에 조금만 늘려서 한 2년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한 제 지역구의 강원대학교병원 같은 경우에 보면 아주 극심한 경영 악화, 특히 메르스 여파까지 있어서 50억 원 적자 상태인데 현재 갚아야 할 돈이 한 60억이 되어서 이걸 대출받아서 내야 될 정도라고 하니까 이런 실정을 감안해서 부칙 1조 시행일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일단 이 의견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입장이 뭐지요? 국장님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임내현 위원 그러기에 앞서서 제 의견에 함께 답하라고 하지요.

강원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경영 상태가 만만치 않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혹시 그게 가능하다면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함께 제시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병원들도 새로운 관행을 만드는 데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서 2년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제점은 대형병원, 대학병원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다라고 하는 게 일반상식인데 왜 대학병원과 대형병원들은 적자 난다고 하지요?

메르스 여파가 있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병원들이 그렇게 적자가 난다고, 가장 잘 나가는 병원들이 적자가 난다고 하면 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영의 문제가 있든지 뭐에 문제가 있는 거지, 다 큰 데로 가고 다 거기로 모였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병원들은 문제고 다 부도난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자가 의사라고 그러고 가장 잘 나가는 직업이 의사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뭐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는 거라서 보건복지부가 근본적인 걸 짚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어디가 문제가 있길래.

그리고 약을 받아서 쓰고 보험료까지 받아 가지고 가는 곳은 병원인데 그러면 중간에 있는 도매상들은 도대체 뭘 먹고 어떻게 사는 거며, 그러면 전체 구조가 되게 이상한 사슬의 고리 아닙니까?

제가 충분히 지역에서, 예를 들면 병원의 그런 문제점을 듣고 고민에 빠지고 해서 대학병원들이 잘 나갈 수 있게, 잘 정리될 수 있게, 또 강원대학은 특별히 국립대학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적자가 난다면 그걸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어야지 약값을 안 주고 늘리고 이래서 고쳐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약을 천천히 받든지, 쓸 만큼만 받든지, 필요한 만큼만 받든지, 아니면 약품 납품업체가 과도하게 갖다 안기는 거라면 그걸 고치든지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듣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

○소위원장 전해철 지금 1년 6개월도 사실은 다른 법에 비해서는 굉장히 길게 하는 건데, 어때요? 그냥 수용이 아니라 국장이 한번 실무적으로……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김강립 사실은 이 부분은 시행 시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련 도매상들의 협회인 유통협회하고도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을 더 연장해서 2년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 주시면 충분히 그사이에 병원협회하고도 보다 좀, 왜냐하면 병원도 자금 회전이 라는 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회전을 높으려면, 빨리 지불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유통

협회에서도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저희가 실무자하고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약값이 너무 센가, 그러면?

○소위원장 전해철 유통협회에서 시행 시기에 대해서도 양해를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김강립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어떻습니까? 그렇게 또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대로 하고 한 번만 더 문구를 전문위원이 불러보세요.

○전문위원 심태규 예, 47조 5항입니다.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공급자에게 의약품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을 수령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약국 또는 의료기관’인데 “다만,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공급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의약품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거기에 따라서 6항과 7항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그대로 옮겨서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수정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칙 부분에 1년 6개월을 2년으로 고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서영교 위원님, 그 정도 양해해 주시면 통과하는 걸로……

○서영교 위원 보건복지부차관님!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서영교 위원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료보험 체계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그런데 다니다 보면 의료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을 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공공의료라고 하는 의미로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의료보험료가 강제로 떼어지면서 상당히 많이 나가요. 그러면 도대체 도매업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것이 그렇게도 괜찮은 것이면 약값이 너무 비싼 건 아닌지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되는데 대한민국의 다수 국민에게서 많은 의료보험료가 나가고 그 보험료에서 의료보험은 항상 적자가 난다 그리고 그리고 대형 병원이 제일 부자라고 하고, 뭐 이 기준은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하

는 건데 이 사회가 모두 다 의대를 지망하고 있을 정도로 이상한 사회인데 거기는 자금 회전이며 어렵다고 자꾸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다수에게는 의료보험료를 과하게 내는 것은 아닌지, 약값이 비싼 것은 아닌지, 약값의 원가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 속에서 너무 잘못된 구조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경제는 어려운데 지불해야 되고 그냥 내야 되는 경상세금들이 너무 많은데 근본적으로 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위원님 말씀에 유념하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그래서 약가 인하를 위한 많은 진전이 있었고 그런 성과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보재정은 최근 들어서 흑자를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약가 인하 등의 노력을 해서 병원들의 경영도 개선되면서 또 국민들의 의료비 건보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시지요.

○서영교 위원 국민들의 건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세요.

○소위원장 전해철 서영교 위원님이 제기했던 근원적·본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차관께서 새로 부임했으니까 계속 검토하고 실무적으로도 검토해서 필요하면 보고도 해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유념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1시15분)

○소위원장 전해철 의사일정 제3항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심태규 위원, 보고하세요.

○전문위원 심태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일정 제10항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해

서 소위로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이 해서 다중이용시설에서 통과가 되면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통과되면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정부 부처 의견.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오늘 의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리가 되니까 이것을 미리 통과시켜 주시면 10항에서 또 통과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게 원안인가요?

○전문위원 심태규 고친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수정하신 것으로 해야 됩니다. 주서 부분 경미한 자구수정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수정이지요?

○전문위원 심태규 예.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위원님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부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 4.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11시16분)

○소위원장 전해철 의사일정 제4항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심태규 위원,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심태규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헌법재판소에서 ‘공익 및 허위 통신’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최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전체회의에서 전부 삭제하면 입법 공백 상태가 생기므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어서 소

위로 회부되었습니다.

일단 검토의견으로서는 위헌 결정으로 지금 효력이 상실되어 있는 무효화된 조문이어서 삭제할 필요성은 있는데 위헌 결정과 관련되어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서 지금 심사 중입니다.

관련 개정안은 8페이지에 보시는 것과 같이 한기호 의원안과 한선교 의원안이 2안이 계속 중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정부에서 출석하신 분이……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최재유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정부 입장 이야기하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최재유 이것은 방통위도 같이 관련된 사항인데 무효화된 법조문을 삭제하는 것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현재 대체입법안이 발의되어서 미방위에 계류 중에 있는데 그것하고 같이 처리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해 주시지요.

○이한성 위원 진척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소위에 상정은 되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최재유 예, 소위에 상정은 되었는데 아직 논의는 못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게 소위에 와서 사실 오랜 기간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을 하기를. 그런데 이 조문은 위헌이 되었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계속 존치하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 그 소위에서 별로 논의가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위헌되어 있는 이 조문이라도 삭제하는 것이 맞다 해서 오늘 소위에 올렸거든요.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아무튼 저는 소위에 올린 취지가 그것을 무한정 기다리면서 위헌 결정된 조문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안 맞다 해서 삭제하고 또 거기에서 통과되어서 오면 우리 법사위에서 의논해서 논의하면 되니까 그게 맞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 취지에도 안 맞고 저희들은 또 미결로 계속 남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위원님들이 참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한성 위원 현재 취지도 그 문헌 전체가 다 위헌이라는 것은 아니고 공익을 해하는 목적이 너무 막연해서, 너무 포괄적이다 그래서 지금 위

헌이 난 상태니까 헌재에서도 삭제해 버리면 또 공백이 생기고.

다만 법을 집행기관에서 헌재의 결정 취지를 참조해서 우선 법집행을 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을 좀 더 기다리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임내현 위원** 전문위원, 그냥 확인하는 뜻에서 묻는 건데 이렇게 위헌 결정이 나면 이것을 개정 하든지 안 하든지 효력은 없는 거지요?

○**전문위원 심태규** 예, 현재 형사법규라서 효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임내현 위원** 그러면 이게 있다 그래서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 법이 없으면 문제가 되고 차이가 있습니까? 위헌 결정이 난 마당에 효력이 없다 그러면 이 법안, 이 조항은 없는 거지요.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심태규** 이게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는 조항입니다.

○**임내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헌법불합치 결정하고는 다르니까요.

○**소위원장 전해철** 통과해 줍시다, 발의한 의원도 있고 하나까.

○**서영교 위원**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전해철** 이것은 원안이지요?

○**전문위원 심태규** 아닙니다.

이것도 부칙을 좀 잘못 만들어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의사일정 제4항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한국우주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

(11시21분)

○**소위원장 전해철** 의사일정 제5항 서상기 의원이 발의한 한국우주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심태규 전문위원!

○**전문위원 심태규** 한국우주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안으로서 사단법인 한국우주소년단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보조, 조세 감면

등 협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체회의에서 다른 청소년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다른 법들도 검토해 본 결과로는 유사한 청소년 단체가 몇 단체 있는 것으로 확인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을 제정할지 여부는 결과적으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정부 입장ियो.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최재유** 이것은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학교 청소년 단체가 6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국우주소년단만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님들.

○**서영교 위원** 제가 그때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다른 곳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또 사실은 한국우주소년단만 특별히 우대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문제 지적이었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그리고 또 특별한 경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임내현 위원님.

○**임내현 위원** 문제를 제기한 위원님께서 그것을 이해를 하셨다니까 저도 더 마음이 편하네요, 발언하기가요.

옛날에 소련에서 제일 먼저 우주선을 띄우고 그다음에 미국이 아주 열심히 해 가지고 달에다가 유인선을 착륙시켰지 않습니까? 우리도 고흥에다가 우주시설도 만들도 뉴프론티어로 갈 때 그런 의미에서는 아까 이 체제에 전혀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것을 인정해 줘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우주의 꿈을 심어 주는 측면에서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전문위원이나 차관님, 스카우트활동 육성법이나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 대강 제정 연도가 언제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제 말씀의 취지는 근래에는 개별 법률로 했던 예가 별로 없지 않아요?

○**전문위원 심태규** 그 부분은 확인 못 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이 형평성 문제 제기를 했던 게 근래에 특정된, 물론 이 육성은 필요한데 특정된 이런 단체활동을 고양하기 위한 개별법 제정 사례가 없다 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를 했었고 나아가서 청소년기본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것이었거든요. 확인됐어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최재유 위원장님, 99년도의 RCY법이 제일 가까운 사례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게 뭐예요? 여기 지금 적시돼 있는 것 말고?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최재유 예, 지금 6개가 있는데 그중에 5개는 개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해양소년단·RCY·한국청소년연맹·걸스카우트·킵스카우트 이렇게 있는데요, 99년도에 제정된 게 RCY법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전문위원, 그것을 확인하시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취지에서 개별법으로 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소위 회부가 됐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주소년단이라는 게 특별하게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것하고 현재 학교 현실에서도 굉장히 필요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등등을 위원님들이 많이 참작해서 그동안 논의했던 것에도 불구하고 통과하기로 됐다, 이렇게 아무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취지를 잘 받아서 차관께서도 이 법을 잘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최재유 예,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원안입니까?

○전문위원 심태규 이 부분도 약간 수정이 있습니다.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상기 의원이 발의한 한국우주소녀단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7.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11시26분)

○소위원장 전해철 의사일정 제6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임재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임재주 임재주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7항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공중보건 의사 등 복무기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내용과 병력동원소집 등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이나 직장인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그다음에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에 응하여 이동 중에 사망 등의 경우 보상을 하는 내용, 끝으로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그 직계비속에 대하여 병역사항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내용 등입니다.

대체토론에서 지적사항은 없었고요, 지난번 소위에서는 고위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관리에 대하여 고위공직자 본인 외에 고위공직자의 직계비속에 대해서도 병역사항을 분리하여 집중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상 과도한 불이익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3쪽을 봐 주시면 첫 번째, 공중보건 의사 등의 복무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지난번 소위에서 논의가 있었고요.

검토의견은 병무청장이 공중보건 의사 등의 복무실태 외에 복무기관의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타 부처 소관기관에 대한 관리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체계상 타당하지 않으므로 공중보건 의사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과 안 제43조제2항 단서 부분은 내용상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므로 본문에 삽입하며 ‘사전 협의’와 ‘합동’은 의미가 중복되므로 간명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그 밑의 수정(안)처럼 국방부와 협의하여 수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번 소위 때 전해철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으시고 위원님들의 뜻이 이런 식으로 모아진 것으로 정리를 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에 응하는 학생 및 직장인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병력동원소집 등으로 인해서 직장인이나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불이익을 주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아래 쪽 검토의견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학생 및 직장인이 병력동원소집 등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불리한 처우를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 이 또한 지난번 소위 때 위원장님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정리를 하셨습니다.

다음,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위한 이동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또는 입영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대한 보상 내용입니다.

징집·소집되어 이동 중인 병역의무자 또는 병력동원소집 등으로 임무수행·훈련 중 또는 이동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가 되거나 또는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 그다음에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병력동원소집 등의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 대상자가 될 수 있고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거나 재해보상금 또는 휴업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또한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 지난번 소위 때 역시 위원장님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8쪽입니다. 이 하나만 정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병역사항 관리 내용입니다.

법안의 내용은 공직자윤리법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그 직계비속에 대하여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입영·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 면제 때까지 병역사항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한다는 내용입니다.

밑에서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병무청 의견입니다. 고위공직자가 현직에 있는 동안 손·자녀가 제1국민역에 편입되어 병역사항 관리의 대상이 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고위공직자와의 밀접성도 자녀보다 떨어지므로 안 제77조의4 중 '직계비속'을 '자녀'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병무청은 의견을 수정해서 냈습니다.

9쪽, 제일 윗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무청은 향후 법안 제출의 취지에 맞게 병역 면탈의 위험성이 높은 연예인이나 체육인 등을 병역사항을 집중 관리하는 대상에 포함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다음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의 아래쪽을 보시면 고위공직자 및 그 직계비속만을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서 병무청이 향후 병역 면탈의 위험성이 높은 직업군을 법안 제출의 취지에 맞게 병역사항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입법 목적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도한 조치가 되지 않도록 집중관리의 대상이 되는 집단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 지적도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병무청의 수정의견 대로 안 제77조의4 중 '직계비속'을 '자녀'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아래 밑줄 친 부분은 일부 수정사항으로서 '병역사항'은 병역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병적'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대통령령으로의 위임규정인 안 제77조의4제2항은 체계상 가장 마지막 항으로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고 안 제77조의3제3항의 '취득한'은 '관리하는'으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18쪽, 별도 관리하는 병적 기록사항의 누설에 관한 처벌 조항입니다.

별도로 관리하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그 직계비속에 대한 병역사항을 공개·누설·제공 또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18쪽 제일 아랫줄에 일반적으로 병적에 기록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데 개정안처럼 고위공직자 및 그 직계비속의 병적에 기록된 사항을 공개·누설하는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게 되는 경우 체계상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안 제91조의2를 삭제하여 병적에 기록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통일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20쪽, 안 제75조, 제75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시기 수정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부분의 안 제75조 및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계속해서 검토할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

부개정법률안의 시행시기와 맞춰서,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1쪽의 내용은 기타 경미한 수정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정부 입장 듣도록 하는데 출석하신 분이……

○국방부차관 황인무 국방부차관입니다.

○병무청차장 김노운 병무청 차장 김노운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누가 주도적으로 먼저 대답을 하실 거지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국방부차관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국방부차관께서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냥 인정되고 인정 안 되고 하는 것을 간단단단하게 하고 추가로 할 게 있으면 병무청 차장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방위사업청에서 누가 나왔나요?

일단 국방부차관님.

○국방부차관 황인무 존경하는 위원장님, 또 전문위원님!

병역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잘 검토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크게 다섯 가지 사항으로……

○소위원장 전해철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세요. 가 항은 어떻게 나 항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지금 가 항에 대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동의’ ‘부동의’,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즉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5개 전체를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병무청 차장은요?

○병무청차장 김노운 저희 병무청에서도 방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전문위원, 4페이지 봐 보세요.

‘사전 협의’는 어디로 가 버렸지요?

○전문위원 임재주 사전 협의는 합동하고 의미가 중복되니까 사전 협의를 위로 올려 가지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여기에 넣었습니다.

다. 그렇게 해서 그쪽의 의견을 다 조회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니까요, 가 항부터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보고 이견이 없으면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가 항에서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는 것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합동에 사전 협의 의미가 있다?

○전문위원 임재주 예.

○소위원장 전해철 나 항, 다 항도 다 합의를 했던 내용이지요?

○전문위원 임재주 예.

○소위원장 전해철 라 항, 고위공직자 부분에 대해서 ‘자녀’로 수정을 해서 보시면 17페이지의 수정(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해 주시지요.

○서영교 위원 고위공직자 자녀 부분으로 바꾸었잖아요?

○전문위원 임재주 예.

○서영교 위원 그런데 이것의 원래 취지는 연예인 등 당사자였던 사람들이 문제가 많이 생기면서 이 법이 나온 거잖아요?

○전문위원 임재주 예.

○서영교 위원 그런데 그것은 빠지고 고위공직자 자녀만 들어가 있잖아요?

○전문위원 임재주 예.

○서영교 위원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임재주 예, 맞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이것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위공직자 자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계속 추적이 되고 있고, 특별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고위공직에 나오면서도 항상 경계의 대상에다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원래 하려고 했던 취지의 것은 빠지고 이것만 남으면 오히려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빼는 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위원 임재주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전해철 예, 간단하게 빠진 경위하고…… 지금 서 위원님은 아예 고위공직자 전체를 빼자는 의견인데 전문위원이 이야기해 보세요.

○전문위원 임재주 원래 연예인·체육인이 고위

공직자보다는 통계상으로도 더 많은 병역 면탈 사례가 있다는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 그런데 사실 국방부에서 그에 대한 논란이 워낙 많고 그래서 일단 고위공직자만 여기 왔는데 이것까지 빼면 이 법의 취지가 많이 퇴색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위공직자를 먼저 넣고 그다음에 국방부는 연예인, 체육인 등 병역면탈 사례가 높은 그런 직군에 대해서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해야……

○서영교 위원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그게 중심이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못 들어가고 고위공직자군…… 병역 면탈을 하면 안 되지요. 안 되는데 엉뚱한 일하다가 엉뚱한 데로 갔으면, 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기호 위원 이게 지금 소위……

○서영교 위원 그리고 다른 나라 사례도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 추적한 사례가 있나요?

○소위원장 전해철 병무청 차장이 이야기하세요.

○병무청차장 김노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의 사례는 현재 찾아볼 수 없었고요. 그것은 현재 우리나라에만 있는 사항인데요.

당초에 이것 할 때 법사위뿐만 아니라 국방위원회에서도 연예인, 체육인 빼면 되느냐 하고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방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일단 고위공직자를 해 놓고 추후에 연예인이나 체육인 이런 사람들을 입법해서 반영하자고 그때 그렇게 해서 의결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의결해 주시면 이어서 체육인이나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바로 입법조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재주 제가 한 말씀……

원래 소위로 온 이유도, 검토보고나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바로 지금 서영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이유입니다. 그것 때문에 왔는데……

○서영교 위원 아니, 고위공직자 자녀는 더욱더 면탈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상한 감시체계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하면 안 되고 더 강하게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해야 되고 다 해야 하는데 그 자녀들이나 이런 쪽이 그런 걸로 인해서 너무 과도한 장치를 당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병무청차장 김노은 위원님, 그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병역사항을 공개하는 게 아니고 이 행되는 과정을 저희들 내부적으로만 관리하기 때문에 과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위원 예.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한성 위원님.

○이한성 위원 제가 문제를 제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 있는 대로 이것이 고위공직자의 직계비속을 쭉 이렇게 해 놓으면, 손자들까지 다 포함을 시키면 물론 연예인, 체육인 빠지는 것도 좀 유감이지만 자기책임의 원칙이라든지 입법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 최소성 원칙 이게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병무청하고 국방부하고 전문위원실하고 그 사이에 얘기를 해서 자녀만 넣는 걸로 했고 체육인과 연예인들을 추후에 조속히 추가하는 걸로, 그런 방침을 조건으로 이것은 통과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임내현 위원님.

○임내현 위원 그런데 사실은 다른 법안 수정에 비해서 지금 전문위원도 앞부분은 썩 문제가 많다고 했다가 뒤에서 썩 바꾸면서 사실 본인이 봐도 부드럽지 않지요, 이게. 앞으로 이걸 한다고 노력하고 뭐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전문위원 내용으로 봐서는 안 하는 게, 여기 빼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바꾸면서 속이 좀 느끼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도 논리적으로는 안 맞는데 같이하자 그러니까 편하지 않게 동의를 해 줘야 할지 좀 의문이 생깁니다.

사실 이 내용 그렇잖아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뒤에다가 ‘향후에 이걸 하겠다’ 아마 다른 책이나 검토보고서에 이런 말은 없을 거예요. 유일하게 이게 별로 안 맞는 건데 억지로 하고 저도 동의해 주면 억지로 동의해 줘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건 아시지요? 그런 보완을 확실히 해야지요.

○이한성 위원 임내현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이게 입법기술상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어느 정도까지가 체육인이나, 그냥 걸어 다니면 다 체육인이나, 연예인도 노래만 부르면 다 연예인이나 이게 대단히 어려운 입법기술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내현 위원** 그러니까 기술상,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삭제해 버리는 건……

○**이한성 위원** 같이 뺄 수는 없고 그래서 우선 빨리 준비해 오시면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준비를 하세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일단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들에 대해서 국방부, 특히 병무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도 잘하고, 고위공직자의 자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도 잘하고 나아가서 실제로 병역면탈에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직업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위원님들이 동의하는 걸로 이렇게 인정하고.

의사일정 제6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항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보고하세요.

○**전문위원 임재주** 7항은 간단합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부분은 금방 검토하신 병역법 개정안과 일부 내용이 같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비군 대원이 동원 또는 훈련의 이행을 위하여 이동하거나 귀가 중에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국가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현행법에 따르면 예비군 대원의 동원 또는 훈련의 참가로 인한 직장에서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으로써 예비군훈련 참가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학교에서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은 미비한 바 이를 마련함으로써 예비군훈련 참가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예비군훈련 참가를 독려하려는 것입니다.

23쪽입니다.

훈련을 위한 이동·귀가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한 재해보상입니다. 안 8조의2로서 이동 중 또는 귀가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금방 통과시키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에, 거기에 맞춘 겁니다. 기타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었지요.

24쪽입니다.

두 번째, 훈련을 위한 이동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 등이 치료비용을 부담하는 내

용입니다.

이동 중 또는 귀가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지자체의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비용을 국가·지자체가 부담하게 하는 내용으로서 역시 병역법 사항과 겹치는 내용입니다. 기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25쪽에 예비군동원명령 등에 응하는 학생에 대한 학교장의 불리한 처우 금지사항입니다.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이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직장인에 대한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금지 는 있기 때문에 학교 부분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 또한 병역법 사항과 맞추는 겁니다. 기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26쪽에 예비군동원명령 등에 응하는 학생에 대한 불리한 처우 시의 벌칙조항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사용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이 동원훈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직장인에 대해서는 이미 처벌조항이 있기 때문에 학생조항을 집어넣으면서 그 처벌조항을 넣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앞에 통과시키신 병역법 사항과 서로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렇지요? 별문제는 없지요?

○**전문위원 임재주** 예.

○**소위원장 전해철** 정부부처 입장?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미 앞에 병역법을 의결했으니까 의사일정 제7항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방부 차관 새로 부임하신 거지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축하드리고 한 말씀 해 보시지요, 간단히.

○전문위원 임재주 또 1건이 더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1건 더 있어요?

이것은 좀 쉽지 않지요?

○전문위원 임재주 이것은 위원님들의 판단사항이십니다. 내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8항까지만 오늘 오전에 논의하는 걸로 하세요.

**8.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11시49분)

○소위원장 전해철 8항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임재주 27쪽입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위산업기술을 정의하고,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며,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두어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대체토론의 지적사항은 방위산업기술을 특별히 보호하려는 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정형에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29쪽입니다.

국방부 의견은 방위산업기술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련된 기술로서 일반적인 산업기술 등에 비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기술이므로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 등의 유출에 대한 처벌보다 가중된 법정형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여 일반 산업기술로부터 독립된 체계로 관리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를 살려 처벌규정의 법정형 기준 또한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으나, 법정형 최고기준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일부 조정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국방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대법원의 의견은 없고요.

29쪽 아랫부분 검토의견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유사한 대상 및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방위사업법이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군사기밀 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각각 법정 최고형을 징역형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벌금형의 경우 '1억 원 이하' 또는 '10억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제정안은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하여 규정하고 있고, 또 제정안 형벌규정에 대해서는 방위산업기술이 산업기술, 군사기밀, 영업비밀 등에 대하여 특별히 가중된 법정형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와 가중된 법정형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정형 기준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32쪽입니다.

동일 법률안 규정 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이 됩니다.

첫 번째, 제정안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또는 침해행위에 대해 징역 1년당 1억 원을 기준으로 벌금형의 수준을 산정하고 있는데요. 동 규정은 일반적인 법정형 기준이 1년당 1000만 원인 것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데 비해서 1년당 1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는 안 제21조제4항의 비밀누설죄나 안22조의 예비·음모죄가 1년당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앞의 다른 조항에서는 1년당 1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 그 뒷부분에서는 다시 1년당 1000만 원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어서 법체계상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정부는 이에 대하여 '유사 법률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법정형 구조를 참고하였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유사 법률인 방위사업법, 군사기밀 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술 유출에 관한 죄, 비밀누설죄, 예비·음모죄에 대해 일괄적으로 1년당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정부 측 참석하시는 분, 국방부 차관 말고 누구시지요?

○방위사업청방산기술통제관 신양재 방위사업청

방산기술통제관 신양재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정부부처, 차관께서 이야기 하실 겁니까?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 물론 위원장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국방부는 존중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게 국가 안전보장과 또 이것의 존엄성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제정 제안을 건의드리는데, 그래서 형량과 벌금액을 좀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의도고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전문위원, 지금 전문위원 수정의견은 1억으로 돼 있던 걸 1000만 원으로 그것만 바꾼 거지요?

○전문위원 임재주 국방부하고 논의를 했는데 특별히 수정의견을 이쪽에서 낸다기보다 15년을 12년으로 하겠다는 건 좀 타당하지 않다 제가 그렇게 저쪽에다 얘기한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아니, 그러니까 전문위원의 의견이 정확하게 원안에 대해서 뭐가 다른 거예요? 형량에 대해서 1억을 1000만 원으로 하는 것, 그것 하나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문위원 임재주 예.

○임내현 위원 그리고 15년 이하가 너무 높다라는 거지요.

○소위원장 전해철 15년 이하도 높다?

○전문위원 임재주 15년이 높고, 예.

○소위원장 전해철 그 두 가지로?

○전문위원 임재주 그리고 한 법률 내에서 1년 당 벌금액이 어느 부분에서는 1억이고 어느 부분에서는 또 1000만 원으로 이렇게 해 놓고……

○소위원장 전해철 예, 그것 안 맞는 것. 방위사업청……

○국방부차관 황인무 제가 추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형량이 산기법에서는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방산기술 관련해서는 15년으로 이렇게 제정을 건의드리는데, 벌금형은 1년당 1000만 원으로 통상 되어 있는데 방산기술에 한해서는 연당 1억 원까지 상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산기술이라는 것이 우리 한반도가 처해 있는 안보환경이 준엄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정 취지입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전해철 알겠습니다.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방산기술통제관 신양재 방산기술통제관입니다.

세 가지 초점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형벌이 과하지 않느냐 하는 건데 이것을 저희들이 고려했던 것은, 일반 산업기술과 달리 국방기술에 대해서는 보다 높게 처벌하는 게 외국의 관례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1.33배를 가중하고 있고 영국과 독일은 3배를 가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15년으로 설정을 했었는데,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지금 현재 국내에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년과 10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인데 저희들 기본적 희망 사항은 15년이지만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주시면 따르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벌금 액수에 관한 것은 일반적으로는 1년당 1000만 원이 통례이지만 이미 국내 운용 중에 있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1년당 1억 원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 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사법의 예에 준해야 되지 않겠느냐……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억 원으로 설정한 이유는 기술이 유출됐을 경우에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인 기술의 가치보다도 기술적·산업적·경제적 파급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산업기술유출방지법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세 번째, 말씀하신 동일 법 내에서의 중요한 범법행위에 관해서는 억 원으로 되어 있고 일부 벌칙에 대해서는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경우에도 직접적 기술 유출이 됐을 경우에는 억 원으로 했고 비밀 유출이나 모의의 경우에는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점을 그대로 준용했다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해 주시지요.

○이한성 위원 그러니까 15년 올리는 것은 타당한 것 같은데요. 같은 법 안에서 징역 1년당 1000만 원짜리가 있고 1억짜리가 있고 하는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고…… 그때 그것은 산업디자인법이 그렇다고요?

○방위사업청방산기술통제관 신양재 예, 패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마 우리가 못봤는지도 모르겠고, 같은 법 안에서는 이게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위사업청방산기술통제관 신양재** 그게 기본적인 요인은 직접 기술 유출 행위에 대해서는 1년당 억 원을 적용했구요.

○**이한성 위원** 예, 글썸, 그렇지만……

○**방위사업청방산기술통제관 신양재** 관련 비밀이라든가 모의범죄, 예비모의범죄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한성 위원** 글썸, 그게 맞는지, 같은 법 안에서 그렇게 체계를 달리하는 게 맞는지를 조금 더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고민을.

○**소위원장 전해철** 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전문위원 임재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된 사례를 많이 찾아보려고 해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하나만 유일하게…… 지금 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도 거의 산기법을 뺐는데 형량만 그것보다 높은 겁니다. 그런데 그 법에서만 그런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법 내에서 1년당 형량이 1억짜리가 있고 어떤 것은 1000만 원짜리가 있고, 저는 그게 타당하지 않다고 계속 저쪽에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임내현 위원** 아까 10년을 15년으로 상향 조정 한 것은 이해가 가고요. 이게 이렇게 중시되면 기본적으로는 자유형을 활용하겠지요. 벌금으로 되는 것은 사안이 좀 가벼운 것을 골라서 할 것이니까요. 그럴 경우에 전 법률체계에 맞추어서 해 주고 오히려 나중에 그 법의 개정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것 양쪽으로 다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체 법체계에 맞춰서 중한 것은 구속해 가지고 실형 선고를 받고 그렇게 유도하고 경미한 것을 재산형을 활용한 거니까 전체적인 법체계를 유지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것은 이례적으로…… 아마 그때도 심도 있게 여기서 논의했다면 그때 거기서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못 걸린 것을 가지고 그놈을 챙기려고 하지 말고 15년으로 올리는 데 이번에는 중점을 두시고, 이것은 균형대로 하고 저것도 나중에는…… 그것도 무거운 것은 10년 이하로 엄하게 하고 가벼운 것을 이렇게 할 때 오히려 1억으로 댔던 부분을 정상적으로 다른 것하고 맞추는 조정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이한 사례를 가지고 거기에다

고집하기보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5년은 15년대로 하고 벌금은 통상 1년에 1000만 원씩을 해서 경미한 사례를 다스리는 데 쓰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예, 이한성 위원님.

○**이한성 위원** 존경하는 임내현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징역형을 선택하도록 하고 무거운 경우에는 구속을 하든지 하고 가벼운 경우, 부화뇌동했다든지 중범의 경우에는 벌금으로 해 가지고 벌금 하면서 1억씩, 몇 억씩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업디자인법이 여기 있지만 그것은 균형이 너무 안 맞는 유일한 법이기 때문에 여기 상정이 되어 있는데 이따 검토를 우리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방위사업청방산기술통제관 신양재**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따를 게 아니고, 아까 국방부차관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이것을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다 동의하고 또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그런 뜻이 왔습니다.

다만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체계상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방사청에서도 이것만을 너무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이 이야기하는 그런 법체계 문제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부처가 합의를 할 수 있으면 합의를 하고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위원님들이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방위사업청 차장이 안 나온 것은 그 사유가, 제가 사인은 했지만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방위사업청방산기술통제관 신양재** 국무총리실에서 방위사업과 관련한 대책 발표가 있어 가지고 함께 배석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소위원장 전해철** 제가 보기에 주무급 배석이고 그 정도면 차장이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오늘 이렇게 승인했습니다마는, 그것도 가서 전달을 하세요.

○**방위사업청방산기술통제관 신양재**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량 부분이 조금 미묘하고 중요하니까 가능한 빨리 계속 심사하고, 전문위원도 좀 더 부처에 취지를 잘 설명해서 원만하게 협의를 할 수 있게 하십시오.

○전문위원 임재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내현 위원 그런데 아까 차관께서는 여기서 정한 대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조정을……

○소위원장 전해철 한 번 더 논의하시지요. 이것을 여기서 다운시켜 버리기가 조금……

○국방부차관 황인무 위원장님,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한 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한데 이것이 오래 가지는 않을 거고 지금 위원님들이 바로 의사결정 하기는 그러는데, 다음 안건이…… 한 일주일 정도 안에 한 번 더 논의하세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그러면……

○소위원장 전해철 오래 가진 않을 거예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저희들이 형량과 이런 조항보다는 방위사업에 관련된 법이 근본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기에 제정을 해서……

○소위원장 전해철 알겠습니다. 차관의 그런 이야기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의사일정 8항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정회하고요.

오후 회의는 2시에 하면 아마 위원님들, 한 시간 이내, 한 30~40분이면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회의는 정회하도록 하는데……

자, 차관께서 처음 오셨는데 한 말씀 하시지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위원장님 바쁘신데 이런 기회까지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하고 여기 법사위원님들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들만 계셔서 제가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미리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법제도 잘해 주시면 저희들이 국방력 강화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안보 태세에 이상 없도록 국방 총력을 경주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정회하겠습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전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되었던 것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9.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소위원장 전해철 의사일정 제9항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강남일 전문위원 보고하세요.

○전문위원 강남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페이지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관 사무로 기존에 있던 알선·조정·재정 외에 새로이 중재제도를 추가하고 분쟁의 하나로 지할 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 변화와 관련된 분쟁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환경분쟁 재정결과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위원회가 신청인에 대하여 법률자문 등 소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전체회의에서 피신청인이 재정결과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법률자문 등 소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소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중앙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 제정입니다.

개정안 제15조제1항을 보면 중앙조정위원회가 중앙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 이런 독립 행정위원회의 경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부여하더라도 그 조직과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규정 내용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가 해당 규정을 제정하는 결과가 되어 적절치 않고 구성의 객관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통상 대통령령이나 정관 등 위원회 외부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중앙조정위원회 내의 어떤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 등의 위원장 선임방법 등

구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도록 하겠다는 게 입법취지인데 이 조항이 마치 중앙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권한을 중앙조정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처럼 읽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운영에 관한 규칙과 조정·재정 및 중재위원회의 각 위원장 선임방법 등 구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분쟁중앙조정위원회라는 기구가 있고—이것은 환경부장관이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위원회에서 그때그때 사건에 따라서 조정이 필요한 것은 조정위원회,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위원회, 알선이 필요하면 알선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고드리는 내용 중에 이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는 개념하고 그 안에서 개별적으로 구성되는 알선위원회, 조정위원회, 중재위원회는 별개의 기구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3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중재위원장의 결정입니다.

안 45조의3에서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게 하고 있는데 정작 중재위원 중에 누가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는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기존에 있는 조정위원회나 알선위원회, 재정위원회에서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그대로 옮겨 오다 보니까 새로 신설되는 중재위원장이 누가 되는지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사실 입법적 불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재위원회의 경우 다른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하고는 달리 당사자가 합의해서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중재위원으로 지명하게 돼 있으므로 이와 같이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에 맞춰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4페이지 3번입니다. 조정의 신청권자입니다.

개정안 제16조제1항에서는 알선·조정·재정절차가 진행 중인 자가 다시금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 또는 중재 신청을 할 수 있

게 하고 알선·조정이 중단·종결된 자도 다시금 알선·조정·재정·중재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을 신청한 후에 다시 조정을 신청하고 또 다시 재정을 신청하거나 다시 중재를 신청하는 등 알선·조정이 중단·종결된 후에 다시 처음부터 알선·조정·재정·중재 신청을 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쟁이 끝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환경분쟁의 가해자로 지목됐다는 이유만으로 피신청인에게 과도한 절차비용을 강요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역량을 소진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번입니다.

개정안 제45조의5 중재의 효력은 이 중재에 대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재규정의 주관적 효력의 범위가 당사자뿐 아니라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중재법에 규정된 예에 따라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중앙조정위원회의 소송지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45조의2에서는 피신청인이 중앙조정위원회의 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중앙조정위원회가 신청인에 대하여 법률자문, 소송서류 검토 및 소송비용 보조 등 소송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설립된 조정기관으로서 환경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일방 당사자를 환경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로 지명하고 타방 당사자를 환경피해 입은 자로 지명한 다음에 중앙조정위원회가 이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 특히 환경피해자에 대해서 법률자문, 소송서류 검토, 소송비용 보조 등 소송지원을 하는 것은 재정에 불복하는 경우 소송제기를 당연히 허용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환경 피해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

해서 현저히 불리한 상황을 만들게 되고 재판청구권을 제약,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보완 논의를 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부처에서 차관님 나오셨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소위원장 전해철 부처 입장, 정부의 입장 이야기하시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항목별로 이야기하는 게 낫겠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항목별로 하겠습니다.

2쪽의 중앙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 제정에 관해서 구체화하는 의견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재위원장의 결정인데 위원장에 대한 선임조항이 빠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정의 신청권자인데 이게 내부의 논의에 따라 넣었습니다마는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의견대로 수용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중재효력도 중재법을 그대로 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중앙조정위원회 소송지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지원으로서 일부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확실히 법적으로 보장을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지적하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기존에 정부에 이런 있던 제도가 없어졌고 대개 내부 규칙에 의해서 여유 재원이 있을 때 하는 추세로 볼 때 수용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이 문제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이런 법사위 논의가 있던 문제를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용해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

래서 이 부분도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내용도 좋은데 그 절차를 잘 하셨네요. 해당 상임위한테 환경부차관처럼 꼭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한성 위원 강남일 전문위원이 명쾌하게 정리를 잘해 가지고, 사전에 막후에서 조정이 좀 된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전해철 같이 이야기한 거지요?

○전문위원 강남일 환경부에서 많이 협조해 가지고 수정안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한성 위원 막후에서 다 협의를 해서 검토가 됐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하고요.

다만 지금 우리 의결정족수가 있으니까 다음항 같이 한 다음에 같이 의결하겠습니다.

## 10.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 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4시30분)

○소위원장 전해철 의사일정 제10항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강남일 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전문위원 강남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앞서 심태규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이용시설을 이 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에 관한 법의 다중이용시설로 일원화하고 실내공기질을 총체적으로 관리·규제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에서 공중이용시설 관련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이 법 개정안에서 다중이용시설에 전부 포함해서 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차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법 제명을, 좀 간단하게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상의 공중이용시설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중이용시설로 일원화했고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적용 대상 다중이용시설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첫 번째, 6페이지 하단입니다. 실

내공기질 측정기기의 부착·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 기산일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법이 처음에 제출된 후 시간이 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개선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었는데 이것을 지금 시점에 맞추어서 고친다면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안 제13조의4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7페이지의 2항은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과 연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정부 입장 이야기하시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하신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운영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기산일 수정은 2017년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뒷부분은 당연히 되고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소위원장 전해철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은?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것은 법 제명의 내용이 기 때문에 저희들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렇게 바뀌도 돼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소위원장 전해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 하시지요.

○이한성 위원 다중이용시설 같으면 지하철……

○환경부차관 정연만 주로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다중이용시설로 해 왔는데 이번에 사실 이 법의 주요 핵심 중에, 아까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 다마는 이런 법이 생기기 전에 공중위생법 차원에서 위생적 관리를 하다 보니까, 위생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사실 공기에 대한 어떤 측정방법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한 관리 수준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중이용시설법이 생기다 보니까 처음에는 일부 시설만 했었는데 이제 실내공기질 전반으로 확대되니까 법사위에서 지적하신 대로 이름도 바꾸는 게 맞고 또 이전에 관련 되는 법에 의해서 해 오던 것을 모으는 작업에서

이게 이루어졌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한성 위원 그러면 다중이용시설 같으면 다중이 몇 명부터가 다중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대신에 다중이용시설은 실내외는 관계가 없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다 실내만 규제를 합니다.

○이한성 위원 다중이용시설도?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모를 일일이 다 나열을 합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도서관은 얼마 규모라든지 하위법에 정해서 저희들이……

○이한성 위원 도서관은 실내가 될 텐데 다중이용하는 지하철 같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지하역사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이한성 위원 그게 실내로 들어갑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실내입니다.

○전문위원 강남일 건물 내에 있기 때문에.

○이한성 위원 지하철 통로는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이 오히려 불확실한 게 저희들이 실내 공간으로 들어가는 개념은 다 법에 통일하게 되어 있는데 ‘다중이용시설’ 그러면 언뜻 들으면 실외도 해당이 됩니다.

○이한성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법적으로 보면 실내공기로 하는 것이 사실은 법을 명확하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이한성 위원 전에는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실내·외를 다 포함하는 것이……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습니다. 오해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한성 위원 다중만 되면 그렇게 인식이 됐고, 지금은 또 실내라고 그러니까 실내가 아닌 경우가 혹시 있지 않느냐……

○환경부차관 정연만 실내만 일단 저희들이 법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성 위원 지하철 상가……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것은 실내로 봅니다, 지하 공간이니까.

○이한성 위원 지하철 상가는 실내로 칩니까? 입법적으로 해석을 해 봤습니까?

○전문위원 강남일 예, 그렇게 해 봤습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우리 법에 그렇게 대상을

해서 정했습니다.

단지 '다중이용시설' 하면 실외에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열린, 오픈,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법은 '다중'을 쓰다 보니까 그것은 오해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실내로 가는 것이 정확하고요.

다중에서도 외곽에 있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지 실외관리법에서 통제하는 게 맞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것은 대기로 들어가는 거고.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습니다.

○이한성 위원 입법적으로 주로 지하철 도로, 상가 그런 것을 실내로 해석해 봤다면 큰 문제는……

○환경부차관 정연만 저희들 법에 정의도 만일 교통차량이 해당되면 법 조항에다가 대중교통 실내공기질 관리를 별도로 하도록 딱 법에다 명시를 해 봤습니다.

○이한성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것 없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수정한 것 있나요?

○전문위원 강남일 예, 수정한 것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수정한 것대로 의결하는데 의결정족수 때문에 일단 다른 것 하고, 차관님은 가시고 큰 논점은 없고 다 수용한 거니까 의결하도록 하고.

차관님 수고했습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고맙습니다.

## 11.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14시37분)

○소위원장 전해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임재주 위원 보고하시지요.

○전문위원 임재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6쪽입니다.

안건 11항,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산업디자인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의 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며 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디자

인진흥원 임직원 또는 그 직위에 있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뿐만 아니라 도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7쪽입니다.

대체토론과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수를 정하는 외에 조직 및 운영, 분쟁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위원의 자격이나 임면요건, 핵심적인 조정 절차와 방법 등을 포함하여 분쟁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위원회 위원의 구성, 임명 등 주요 사항은 법률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8쪽입니다.

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입니다.

법안의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정거래 위원회와 협의하여 산업디자인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2013년 6월에 고시된 '디자인 용역계약 표준계약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이고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39쪽입니다.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입니다.

법안의 내용은 산업디자인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정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분쟁의 조정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조정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고 그밖의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분쟁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산자부의 의견은 4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의 중간 부분에 조정위원회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정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여 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정위원회는 현실적으로 소송 등의 절차를 밟기 어려운 영세한 사업자 등을 위하여 간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서 안 제10조의3제3항에서는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 경우 조정 당사자는 이 사건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 디자인업체에게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는 소송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 제10조의3제6항이 위원의 자격이나 임면요건, 핵심적인 조정 절차와 방법 등을 포함하여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산자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국민으로 하여금 분쟁조정 절차의 중요한 사항을 예측할 수 없게 하며 국가 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은 반드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적어도 조정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임명, 조정 기간, 조정중지 사유 등 주요 사항은 법률에 포함시키고,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그 외의 조정 절차와 방법도 개정안처럼 산업통상자원부령보다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검토의견입니다.

이에 따라서 산자부와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같이 마련한 수정안에는 조정위원회에 20명의 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20명의 위원은 어떤 사람들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했고 기타 관련된 절차를 보다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43쪽의 8항을 보시면 제2항 내지 7항의 규정 외에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분쟁의 조정방법, 절차, 비용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했습니다.

47쪽입니다.

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입니다.

시·도지사는 지역 디자인 특화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근 시·도지사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지역디자인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지역 디자인 사업을 지역디자인센터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랫부분의 밑줄 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향후 건립예정인 디자인센터의 건립 및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 제8조제3항이 ‘특별시장·광역시

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시·도지사’로 약칭하고 있으므로 안 제11조의2 제1항은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49쪽입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 임·직원의 비밀도용 금지 내용입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 임·직원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 의무에 ‘도용의 금지’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 또한 다른 유사 입법례를 참고할 때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정부에서 차관님 나오셨지요?

인사하시고……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산업자원부 제1차관 이관섭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정부 입장 이야기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기본적으로 대체토론 때 지적하신 부분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법사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전체 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예.

○소위원장 전해철 다 수용하시는 걸로?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예.

○소위원장 전해철 그래요.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시지요.

○김진태 위원 좋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다른 이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정족수가 되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예, 고맙습니다.

○이한성 위원 개인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예, 잠깐 앉아 주시지요.

○이한성 위원 잠깐만 앉으세요.

그때도 임재주 전문위원님이 맡았지요? 국방부 병역법하고 방위산업법 관계.

그때도 벌칙이 어떤 것은 1년당 1000만 원씩

대응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1년에 1억씩 대응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지요?

- 전문위원 임재주 방산기술법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산업 무슨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한성 위원 이거던데요?  
○전문위원 임재주 예.  
○이한성 위원 이거더라고요.  
○전문위원 임재주 산기법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 이한성 위원 산업디자인이 아니고?  
○전문위원 임재주 산기법.  
○이한성 위원 이 법이 아닙니까?  
○전문위원 임재주 이것은 아닙니다.  
○이한성 위원 아까 이 법이라고 한 것 같은데?  
○전문위원 임재주 이 법이 아니고요.  
○소위원장 전해철 이것은 별척 없지요.

차관께서는 그 법 아세요? 1년에 1000만 원 또는…… 처벌조항 되어 있는 것, 잘 모르시나?

- 이한성 위원 아침에 기억 안 납니까?  
○전문위원 임재주 그 법이 아니고요, 산기법이라고 하는데 산업기술…… 좀 낫습니다.  
○이한성 위원 내가 잘못 들었나……  
○전문위원 임재주 예, 이 법이 아닙니다.  
○이한성 위원 아침에는 오늘 상정된 것 같이 그렇게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어차피 오늘 논의는 다 마쳤는데 전문위원이 얘기하는 그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벌칙조항이 징역 5년 같으면 5000만 원으로 대응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또 5억으로 대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법 중에서 방위산업법하고 산업기술 관계 법하고 2개가 그런 문제를 안고 있어 가지고 아침에 논의된 적이 있거든요.

-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대부분 벌금하고……  
○소위원장 전해철 잠깐만요.

법안 이야기해 주세요, 무슨 법인지.  
○전문위원 임재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보입니다.

- 소위원장 전해철 그것 아시나요, 차관?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그 법 내용은 제가 알고 있으나 벌칙조항에 얼마가 얼마에 매칭 되는지 그 부분은 대략 그것 할 때 법무부하

고 협의해서 징역 1년에 1000만 원 이런 식의 양형 그게……

- 이한성 위원 처음에는 하다가 나중에 퇴장할 때 막 산업기술 보호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강하게 하면서 균형을 깨 놓은 게 있는가 봐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한성 위원 예, 하여튼 이 법은 아니니까 우선 논의를……

차관님 잘 다녀가시고 다음에 뵙시다.

우리 임재주 전문위원이 아주 훌륭해 가지고 막후 연구를, 검토를 아주 잘하셨네요.

-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지적하신 부분은 법에 너무 빈약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법에 보완하는 게 권리 구제에 맞는 것 같습니다.

- 이한성 위원 법사위가 확실히 다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예, 타당하신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 이한성 위원 잘 다녀가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전해철 차관님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시고요.

## 1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 행정위원장 제출)

(14시48분)

- 소위원장 전해철 의사일정 제12항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지난 6월 16일 날 대체토론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방공사의 사장을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되는 안 제58조제5항제2호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공사와 공단을 상호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는 정당한 청산절차를 회피하는 것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11쪽에 보시면 7월 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사와 공단의 상호 전환

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봐서 원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안 제58조제5항제2호의 해임 사유는 존치여부와 존치하는 경우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58조제5항제2호에 관한 다음의 대안을 수정의견으로 2개 제시해 봤습니다.

첫째 안은 해임사유를 구체화하는 방안인데 여기 보시면 안 제2호를 삭제하고, 1, 2호로 되어 있는 것을 5항으로 통일시키되 다만 여기에 대해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지만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2호를 삭제하고 문언을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하나의 안으로 제시를 했고,

두 번째 안은 원안을 유지하되 자구만 일부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58조5항2호의 ‘명백하고 중대하게’를 ‘중대하고 명백하게’로 바꾸고 통과시키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대하고 명백하게’가 약관 포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또 중대하고 명백한 것 자체가 어느 정도 한정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냥 통과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의견들이 지난 소위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참석하신 분 신분·이름, 인사하시고.

○행정자치부지방재정세제실장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 정정순입니다.

차관께서 예결위에 참석 중이라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정부 입장 이야기하시지요.

○행정자치부지방재정세제실장 정정순 전에 소위에서 검토해 주신 데 따르면 2안으로 해 주시는 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뜻도 반영하고, 또 소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자구를 수정해서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니까 2안이라는 게 ‘명백하고 중대하게’를 ‘중대하고 명백하게’로 바꾸어 가지고?

○행정자치부지방재정세제실장 정정순 예.

○소위원장 전해철 그리고 앞부분의 공사와 공

단 상호 전환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당연히 행자부에서 이야기하고?

○행정자치부지방재정세제실장 정정순 예, 법인세나 취득세, 등록세가 개별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다 소위 심의과정에서 문제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시지요.

이한성 위원님.

○이한성 위원 정정순 실장님, 취지가 뭔지 모르겠는데 58조2항1호 보면 ‘경영 개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명령을 따른다는 말은 복종한다 이런 말 비슷하게 들리고, 법상 명령은 지시명령 이런 사실상의 군사명령이 아니고 행정상의 법에서 주어진 임무를 담당자가 이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하는 게 법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영문 법률 보면 ‘오더(order)를 컴플라이(comply) 하지 않는 경우’ 주로 그렇게 쓰거든요? 폴로 오더(follow order)가 아니고 컴플라이 오더(comply order), ‘명령을 이해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문언을 그렇게 수정하는 게 좋겠다.

남궁 수석전문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그렇게 해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렇게 고치는 게 법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행정자치부지방재정세제실장 정정순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2항 이야기하시면서 1안과 2안에 대한 의견까지도.

○이한성 위원 정부에서 그렇게 원하니까 2안으로 해도 무난한데.

○소위원장 전해철 ‘따르지 아니한 경우’를 ‘이행하지’로, 그 용어를 그렇게 더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한성 위원 그렇게 추가를 합시다.

○행정자치부지방재정세제실장 정정순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러면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잠깐만요, 그것은 수정하고 1안, 2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에서 2안 이야기하고 하나까……

그러면 정리된 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오늘 정리된 것은 2안인데 2안 중에 5항1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변경하고 또 ‘명백하고 중대하게’를 ‘중대하고 명백하게’로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됐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정족수가 되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13.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

(14시55분)

○소위원장 전해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심태규 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전문위원 심태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저번 6월 25일 소위에 상정돼서 심사됐었고 10월 29일 오늘 다시 상정됐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목적 조항하고 국가의 책무에 추가하고 이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의 요지는 출입국관리법에 외국인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는 조항과 개정안의 내용이 충돌하지 않느냐라는 데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저번 2소위에서 이 부분에 관한 법무부의 의견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7페이지 보시면 법무부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안에 나와 있는 정치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게 되면 —가운데 부분

입니다—적극적인 정치활동 허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수정안도 여전히 외국인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17조2항 및 예외적으로만 외국인의 선거권을 인정하는 공직선거법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것과,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중복 우려가 있다, 기본계획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 두 가지 의견이 법무부의 의견으로써는 확인이 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래서 결론적으로 법무부 의견이 어떻다는 거예요,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심태규 예, 법무부 의견은 중복 우려가 있어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왔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니까 지금 2개 아니에요?

○전문위원 심태규 아닙니다. 각각 두 가지 법에 걸린다는 뜻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자체가 개정이 되면 정치 참여 부분에 있어서 출국관리법·공직선거법 부분하고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하고도 중복될 우려가 있다라는 뜻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법무부 쪽에서는.

○소위원장 전해철 차관께서 출석했지요, 정부 입장 이야기하시지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지난번 말씀을 한 차례 드린 바와 같이 여성가족위원회의 입장은 이 조항은 다문화가족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국가 등의 책무를 선언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참여’라는 부분도 문구를 위원회 의결하면서 삭제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이 외국인의 정치 참여를 일반적으로 허용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타 법률과는 충돌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사료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래서 원안대로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개정안대로 유지해야 된다 그 말씀인가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예,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논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대안을 마련한 것은 3조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이것을 만약에 정치가 그렇게 부담이 되신다면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이렇게 ‘등’을 줘 넣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

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3조의2에 3의2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정치·경제·사회·문화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도 지난번 논의에서는 정치와 활동이라는 것이 많이 걸린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가위 입장과 저희 입장이 이게 선언적인 것이고 다른 법률을 제한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개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 안을 미리 받았나요, 아니면 지금 처음 듣나요?

○전문위원 심태규 지금 듣는 안입니다. 미리 받지는 못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일단 다른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해 주시지요.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보니까 참 고충이 이해가 됩니다. 여가부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권익을 증진시킨다는 선언적 의미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좀 예민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리 선언적이라 하더라도 ‘정치’라는 표현을 여기다가 그대로 두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정치’만 빼고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을 15쪽 3조의 경우에는 ‘영위하고 사회 모든 영역에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 이렇게, 굳이 ‘경제·사회·문화’를 열거하지 말고 ‘사회 모든 영역에서 구성원으로서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떤가, 또 뒷부분은 역시 ‘정치·경제·사회·문화활동’을 ‘사회의 모든 영역활동, 제반활동 증진’ 이런 식으로 열거하지 않고 포괄해서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일단 지금 여가부의 수정의견, 또 김진태 위원님이 안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 의견은 어때요? 그러니까 처음 들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심하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전문위원 심태규 일단 정치 부분이 빠지면 법무부 쪽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충돌이

덜해질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여가부에서 제시한 안이나 김진태 위원님 말씀하신 안도 사실은 사회라는 것의 정의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정치 부분이 명확하게 안 들어가 있는 이상은 비슷한 의미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정치적인 부분이 빠진다는 것이 속기록에서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계획 세울 때도 그런 부분은 참조가 되면 그 정도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하시는 데, 일단 법무부 의견 중에서 이 법 자체를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중복 우려로 반대하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당 부분 논의가 되어 왔고 일정 부분에 한정해서 정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건데 그걸 다 해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중복되니까 이 법 자체를 반대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고요.

용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지요.

○노철래 위원 그런데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1조(목적)을 보면 김진태 위원이 말한 내용에 동의하는 게 꼭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세분화시켜 가지고 나누어 놓음으로써, 목적에 규정하고 있는 범위의 이것을 이렇게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나? 진짜 이것 그대로 보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하는 데 정치가 꼭 들어가야 되나요? 가족생활은 예를 들어 문화생활이나 스포츠생활이나 등등 제반 레저생활 이런 것들이 안정적인 것이지 꼭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에 어떤 역할을 함으로써 목적에서 주어지는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글썄……

그래서 나도 김진태 위원하고 동의하는 사항이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서 다문화·외국인 구성원들에 대해서 차별화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게 도와주는 것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 필요하지.

그런데 나는 이걸 꼭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정치’를 표기해야 된다는 것은 1조나 3조에 정하고 있는 쪽에 부합되는 뭐는 아닌 것 같다 그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

하시기 전에 제가 이야기 한번 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이걸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또는 완전하게 우리 사회에 함께하기 위해 서라면 어떤 영역이든지 지장과 제한이 없이 다 문화가족이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정치적인 제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현재도 다른 선거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고 충분히 제한을 할 수 있어서 원칙적이고 선언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영역을 축소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다문화가족과 함께 살아가야 될 그 가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반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를 이야기해서 이게 계속 2소위에서 보류돼서 결국 이 법 자체가 표류하고 있어서요, 사실은 여가부에서도 좀 더 이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고 그런 와중에 오늘 여가부에서 정치를 빼고, 어찌 보면 좀 교육책이지만 그런 우려가 있는 것들을 반영한 결과로 해서 정치를 빼고 수정안을 만들어 줘서 저는 우려를 했던 위원님들의 그것은 많이 없어졌으니 여가부에서 지금 제시하는 절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수용해서 넘어가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한성 위원 절충안이 어떤 것이지요?

○소위원장 전해철 한 번 더 불러 보세요. 차관님 더 정확하게 불러 보세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3조는 정치를 빼고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노철래 위원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거기다가 사회를 넣으면 어떤가?

○이한성 위원 앞에 ‘사회’가 들어갔는데?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그래서 저희가 사회로 해 가지고도 한번 생각을 해 봤고 문의도 좀 했는데 ‘사회’라는 것이, 아까 전문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이 구체성이 너무 없다 그래서 저희가 타법도 ‘사회 각 분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돼 있는가 한번 찾아봤는데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는지 몰라도 그게 잘 보이지를 았았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에서는 ‘사회 각 분야’라는 것이 이게 너무 뜻이 막연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오늘 토의가 이렇게 있으시니까 만약에 그렇게 정리가 된다면

그걸 이런 취지로 해석을 하면 되니까 그건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조의2의 3의2호에 보면 정치는 빼고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이렇게 첨삭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각 분야에서 활동증진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예.

○소위원장 전해철 어떻습니까? ‘정치’ 빼고 합시다. 우려가 되니까 좀 양해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가시고요.

전문위원님들 9항부터 의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이미 다 상정은 되어 있지요?

9항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이지요?

○전문위원 강남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제9항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다중이용은 뭐지요? 그것도 수정안?

○전문위원 강남일 이것도 수정안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제10항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전문위원 임재주 수정안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노철래 위원님이 이의가 없으면 확실히 없는 겁니다.

○노철래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것도……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수정안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소위는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진태	노철래	서영교	이한성
임내현	전해철	홍일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전문위원	임재주
전문위원	강남일
전문위원	심태규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구윤철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최재유
국방부차관	황인무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	정정순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보건복지부 차관	방문규
보건의료정책관	김강립
환경부차관	정연만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병무청차장	김노운
방위사업청 방산기술통제관	신양재